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審議 番 號	63
-----------	----

提出年月日: '95. 11. .
提 出 者 : 大田廣域市

1. 提案理由

改正된 駐車場法 施行規則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에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을 地域實情에 맞도록 改正하고 公共機關의 廳舍에 附設된 駐車場을 有料化 可能토록 하여 都市交通需要管理에 能動的으로 對處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設置가 곤란할 경우 設置義務를 免除하고 당해 駐車場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納付토록 하는 關聯規定을 地域實情에 맞게 정하고자 함 (안 제17조).

나. 公共機關의 廳舍에 附設된 駐車場을 有料化함으로써 都心 進入車輛을 抑制하여 都市交通需要管理에 積極的으로 對處코자 함 (안 별표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은 영 제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평가금액의 범위는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2 시 간 까 지		2 시 간 초 과 (1구획15분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최 15 분	15분초과후 매15분이내			주 간	야 간
1 급 지	400	300	600	8,700	104,000	69,000
2 급 지	300	200	500	6,500	72,000	43,000
3 급 지	200	100	300	2,000	36,000	22,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 3월 09:00~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광역시장이 지정하되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률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9.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6)

건축물 부설주차비용 납부기준

(제 17 조 관련)

가. 5대 이하일 경우(1대당 기준면적 : 11.5m²)

토지평가금액 (㎡)	비 용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평가금액의 $\times \frac{50}{100} \times 11.5$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75만원 + 1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30}{100} \times 11.5$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20만원 + 2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8}{100} \times 11.5$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242만원 + 3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6}{100} \times 11.5$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41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4}{100} \times 11.5$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817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2}{100} \times 11.5$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2,070만원 + 6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0}{100} \times 11.5$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2,300만원 + 7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8}{100} \times 11.5$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2,507만원 + 8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6}{100} \times 11.5$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691만원 + 9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4}{100} \times 11.5$	
10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2,852만원 + 10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2}{100} \times 11.5$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3,128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8}{100} \times 11.5$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312만원 + 14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6}{100} \times 11.5$	
1600만원 초과	3,450만원 + 1600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4}{100} \times 11.5$	

나. 6대 이상일 경우(1대당 기준면적 : 18m²)

토지평가금액 (㎡)	비 용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text{평가금액의} \times \frac{40}{100} \times 1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720\text{만원} + 1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30}{100} \times 18$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260\text{만원} + 2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8}{100} \times 18$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64\text{만원} + 3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6}{100} \times 18$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232\text{만원} + 4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4}{100} \times 18$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2,664\text{만원} + 5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2}{100} \times 18$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060\text{만원} + 6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20}{100} \times 18$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3,420\text{만원} + 7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8}{100} \times 18$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744\text{만원} + 8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6}{100} \times 18$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4,032\text{만원} + 9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4}{100} \times 18$	
10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284\text{만원} + 10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2}{100} \times 18$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716\text{만원} + 12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10}{100} \times 18$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5,076\text{만원} + 14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8}{100} \times 18$	
1600만원 초과	$5,364\text{만원} + 1600\text{만원초과금액의} \times \frac{6}{100} \times 18$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별표 6)</p> <p>건축물 보설주차비용 납부기준 (제 17 조 관련)</p> <p>가. 5대 이하일 경우 [1대당 기준면적 : 11.5㎡]</p>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적평가금액 (㎡)</th> <th>비 준</th> <th>납 부 기 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00만원 이하</td> <td>평가금액의 $\frac{30}{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td> <td>175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30}{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td> <td>32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td> <td>1,243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td> <td>1,541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td> <td>1,817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td> <td>1,07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td> <td>1,30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td> <td>1,507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 <td>1,851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1000만원 초과 1100만원 이하</td> <td>1,857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11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 <td>1,028만원 - 1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td> <td>1,312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td> <td>$\times 11.5$</td> <td></td> </tr> <tr> <td>1600만원 초과</td> <td>1,450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td> <td>$\times 11.5$</td> <td></td> </tr> </tbody> </table> <p>나. 5대 이상일 경우 [1대당 기준면적 : 1.8㎡]</p>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적평가금액 (㎡)</th> <th>비 준</th> <th>납 부 기 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00만원 이하</td> <td>평가금액의 $\frac{10}{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td> <td>7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td> <td>1,28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td> <td>1,784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td> <td>2,17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td> <td>1,584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td> <td>1,06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td> <td>1,42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td> <td>1,714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6}{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 <td>4,032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10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td> <td>4,284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 <td>4,71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td> <td>5,976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td> <td>$\times 1.8$</td> <td></td> </tr> <tr> <td>1600만원 초과</td> <td>5,264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td> <td>$\times 1.8$</td> <td></td> </tr> </tbody> </table>	표적평가금액 (㎡)	비 준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평가금액의 $\frac{30}{100}$	$\times 11.5$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75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30}{100}$	$\times 11.5$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2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243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41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817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07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30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507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851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1000만원 초과 1100만원 이하	1,857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1.5$		11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1,028만원 - 1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1.5$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312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1.5$		1600만원 초과	1,450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1.5$		표적평가금액 (㎡)	비 준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평가금액의 $\frac{10}{100}$	$\times 1.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7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28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84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17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	$\times 1.8$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584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8$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06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42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714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6}{100}$	$\times 1.8$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4,032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	$\times 1.8$		10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284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8$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71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5,976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8$		1600만원 초과	5,264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8$	
표적평가금액 (㎡)	비 준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평가금액의 $\frac{30}{100}$	$\times 11.5$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75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30}{100}$	$\times 11.5$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2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243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41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817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07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24}{100}$	$\times 11.5$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30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507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851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1.5$																																																																																																																							
1000만원 초과 1100만원 이하	1,857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1.5$																																																																																																																							
11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1,028만원 - 1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1.5$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312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1.5$																																																																																																																							
1600만원 초과	1,450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1.5$																																																																																																																							
표적평가금액 (㎡)	비 준	납 부 기 준	비 고																																																																																																																						
100만원 이하	평가금액의 $\frac{10}{100}$	$\times 1.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7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28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84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17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	$\times 1.8$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584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8$																																																																																																																							
6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06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7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42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8}{100}$	$\times 1.8$																																																																																																																							
8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714만원 - 8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6}{100}$	$\times 1.8$																																																																																																																							
9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4,032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4}{100}$	$\times 1.8$																																																																																																																							
10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284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2}{100}$	$\times 1.8$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71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frac{10}{100}$	$\times 1.8$																																																																																																																							
14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5,976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8$																																																																																																																							
1600만원 초과	5,264만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frac{8}{100}$	$\times 1.8$																																																																																																																							

3. 參考事項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영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평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한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 12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 12. .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11. 23.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1. 27.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대전광역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 12. 1) 상정,
질의,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정 범 기)

가. 제안이유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등)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여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

나. 주요골자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 (안 제17조).

(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여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함 (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 홍 진)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앞의 내용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5월 26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산정기준을 토지가액 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평가 금액 범위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 공공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화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이 납부비용의 과다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심지에서는 사실상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건축행위의 제약과 재개발 및 불법주정차 근절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정할 수 있어 대전의 경우 도심내 평균 토지평가 금액을 m²당 5 ~ 600만원으로 볼 때 5대 이하의 주차장건설 비용이 해당 평균 2,055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기준으로 비용납부기준을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 공공기관내의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의 무료이용 관행으로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교통수요 유발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으로서

6대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심지역 공공기관부터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료화 추진을 위한 근거

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대처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시행에 앞

서 시행대상 공공기관 주차요금 범위 및 시간, 주차차량에 대한 요금 면제기준 등 관련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검토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